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700
----------	------

김현기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3)

- 존경하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
여 도시의 개발·정비, 토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
관리 등을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거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, 업무 및 운
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, 현재 「서울특별시 행정기
구 설치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
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규정을
마련하였습니다.
- 다만,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서울시

의 관리,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주택실 주택정책과 사무로 각각 분장되어 있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우려되는 바입니다.

- 이에 따라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공사 ‘사장이 예산편성, 인사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’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토지·주택 등 공급 및 관리, 도시·역세권개발, 재정비촉진사업, 관광지 등의 개발·운영, 외국인투자사업, 한강개발 등 서울시의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요 산하기관입니다.
-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, 주택실 주택정책과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세 주체가 상호 면밀히 사무를 검토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